대구광역시 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과정

- O 발의일자: 2023. 8. 25.
- O 발 의 자: 오연환 의원 외 4명
- O 회부일자: 2023. 8. 28.(의안번호 제471호)
- 상정일자: 제24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제1차 사회도시위원회(2023. 9. 11.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: 오연환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「아동복지법」 및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선・보완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비영리법인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던 신고접수 업무를 구청장이 수행하도록 명시(안 제5조)
- O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명문화(안 제6조)
- O 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대한 정책 심의 조문 재정비(안 제7조)
-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따라 시행규칙 관련 규정 삭제(안 제13조)

O 부적절한 용어, 문장, 띄어쓰기 등 정비(안 제1조 외)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진호)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아동복지법」과 「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무의 법 적합성을 확보하고, 〈법령 입안・심사 기준〉과 〈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〉에 부합되도록 용어・문장・표기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
- 안 제5조는 아동학대범죄 신고 기관에 관한 사항이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'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'을 '대구광역시서구 또는 수사기관'으로 수정하였고, 안 제6조는 아동학대 예방계획수립 시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조례의목적에 표현된 취지가 잘 드러나게 하였으며, 안 제7조에서는 독립적인운영 규정이 없는 아동학대예방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 후법정 기구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심의하도록하여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였음.
- 그 밖에 안 제2조에서 "아동보호전문기관"에 관한 정의 대신에 "피해아동"에 관한 정의를 추가한 것이나 안 제13조의 시행규칙 포괄위임 규정을 삭제한 것은 조례 개정 사유와 법규 체계를 고려하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며, 조례 개정 사항 전반을 살펴볼 때본 개정조례안은 법적 근거와 타당성을 두루 갖추었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심사결과: 원안가결